사외이사
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2012. 3. 23.

SKC 주식회사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 적)

이 규정은 SKC 주식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기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권 한)

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 (구 성)

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고 한다)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②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③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①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,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는 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 의

제 6조 (소집권자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

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사항 및 개최일을 정하고 그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서신, 전자우편,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제9조 (결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·결의한다.

①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
② 기타 사외이사후보의 추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10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,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3조 (사무국)

이사회 담당 사무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4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2008년 1월 16일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년 3월 23일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